월간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2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다.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라.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자본시장연구원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 범위 확대)

# 1. 법률*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1/25 개정 · 시행)

### 1) 개정 이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 범위 확대 및 지정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 등의 강화 등

— 외화증권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

### 2) 주요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 대상 확대(제6조의3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투자자의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부동산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

□ 종합투자계좌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제7조 제4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4호 아목 신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자기신탁업 설정하고 있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자산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예외 인정 사유 확대(제63조 제2항 제3호)

— 금융투자업자의 외화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추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강화(제7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은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어야 함

— 사업계획 기준, 사회적 신용 기준 및 단계별 2년 이상의 업무 영위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자본규모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자기자본 등 관련 기준까지 추가로 충족하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관련 모험자본 공급 기준 신설(제77조의6 제2항 제4호 신설)

— 벤처기업 등 생산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모험자본 공급 기준을 마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기준 개선(제77조의6 제3항)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및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액의 상한 기준(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 및 종합투자계좌의 추가납입 · 해지 시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평가 기준 등을 신설하고,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재산거래 제한 기준을 구체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모험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다.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 증거 수집 · 분석 등의 원칙 및 정보누설 금지)

##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5/11/25 개정 · 시행)[1)]

#### 1) 개정 이유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2.9.)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에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을 추가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제4-102조의9)

—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 파생결합증권 · 사채 내부대여 한도 제한(제2-24조 제3항)

— 파생결합증권 · 사채로 조달한 자금과 고유재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

□ 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에 대한 특례 부여(제3-24조의4 제4항)

—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해당 종투사의 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하여 종투사의 IMA 운용여력 확보

□ IMA 손실충당금 제도 내실화(제4-99조, 제4-102조의8)

— 기존에 존재하던 IMA 손실충당금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적립 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제2-24조, 제4-102조의8 제4항, 제4-102조의10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종투사 지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제4-102조의4)

—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종투사 지정 시에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므로 평가위원회의 구성 · 운영 근거 마련

□ 발행어음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제4-102조의7)

—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

• 기존 : 30% , 개정 : 10%

□ 대차거래의 중개업 인가 요건 추가(별표 2)

—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으로 매매체결전문인력(1인) 및 전산전문인력(4인) 요건을 신설

##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5/11/19 개정 · 시행, 2025/11/25 개정 · 시행)

###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위법성의 정도 및 사전예방 · 사후수습 노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4.9.)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을 추가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제34조의2 신설, 별표 6 신설)

— 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 세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수습 노력 등 다양한 사유를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가중 · 감경 기준 마련

□ 발행어음, IMA를 투자성 상품으로 열거(제3조 제3항)

— 기존 금소법령상 성격이 모호한 발행어음, IMA를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

## 다.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5/11/5 제정 · 시행)

### 1) 제정 이유

□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장조사, 영치권 등의 권한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한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디지털 포렌식 관련 용어 정의(제2조)

— 디지털 증거,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조사관, 이미징 등 용어 정의

□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의 원칙 및 정보누설 금지(제3조 및 제4조)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디지털포렌식 담당자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누설·이용 금지

□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7조)

—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담당자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방법과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참관·선별 등의 방어권 보장

□ 디지털 정보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0조)

—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담당자는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최초 수집된 상태로 보관토록 하고,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 등 보안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디지털 정보 수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조사와 무관한 정보는 폐기토록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정비)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외국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자격 요건 정비)

## 3. 한국거래소 규정*

###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5/11/11 개정 · 시행)

#### 1) 개정 이유

□ 외부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상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정비(제11조)

— 외부감사법상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기 위한 등록제도*가 외국기업에도 적용되도록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요건 추가

• 외부감사법(§9의2) 개정에 따라 국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18.11. 시행)

□ 상장폐지 관련 절차 정비(제19조, 제51조)

— 상장폐지 심사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시장간 상이한 절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기한을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정비

| 구분 | 현행 | 개선 |
|---|---|---|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기심위)* | - 대상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 대상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br>- 대상 결정 후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제출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
|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위·상공위)* | -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

* 기심위: 기업심사위원회 / 상공위: 상장공시위원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5/11/24 개정 · 시행)

### 1) 개정 이유

□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인 자격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외국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자격 요건 정비(제16조 제1항 · 제3항)

— 신규상장하는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국내 회계법인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추가 요건으로 명시

□ 기타 자구 수정(제47조 제2항 제1호, 별표 6, 별표 10)

—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세칙 문구를 명확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합리적 사유 없이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금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외화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한 공시자료 제출 서식 정비)
다.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미달러화 예탁금에 대한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의무화)
라.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부동산신탁사 영업 관련 내부통제 및 심의절차 강화)

## 4.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5/11/13 개정 · 2026/1/1 시행)

#### 1) 개정 이유

□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통해 투자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

— 금감원 · 금투협, 예탁금 이용료 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2025.9.30.)

#### 2) 주요 내용

□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금지(제3-7조)

— 개인 · 기간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예탁금 관련 비용 산정기준 개선(제3-7조)

—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

###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5/11/14 개정 · 2026/1/1 시행)

#### 1) 개정 이유

□ 원화와 외화(美 달러화)를 구분하여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예탁금 공시시스템 개선 추진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예탁금 이용료 제도 개선 관련 보도자료, 금감원 · 금투협, 2025.9.30.

### 2) 주요 내용

□ 외화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한 공시자료 제출을 위해 관련 서식 정비(별제 제68호)

—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종류별 현황 및 지급기준 신설

## 다.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2025/11/13 개정 · 2026/1/1 시행)

### 1) 개정 이유

□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통해 투자자 권익을 제고하고, 규정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치가 부적절한 일부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

— 예탁금 이용료 제도 개선 관련 보도자료 발표, , 금감원·금투협 (2025.9.30)

### 2) 주요 내용

□ 미달러화 예탁금에 대한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의무화(제4조 제1항)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을 통화별로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 통화는 원화 및 미 달러화로 한정

□ 예탁금 관련 비용 산정기준 개선(제4조 제3항)

— 예탁금의 수취, 별도 예치, 지급 등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

□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의 보고(제5조)

—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하고, 이를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함

□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제6조)

— 회사는 소비자호보 등 관련 부서 임원(또는 부서장)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라.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2025/11/13 제정 · 2026/1/13 시행)

### 1) 제정 이유

□ 부동산신탁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건전 경영 문화 확립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제정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5.8,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후속조치로서 업계 TF 회의를 통하여 작성

### 2) 주요 내용

#### 가) 신탁사업 수주 관련 심의절차 강화

□ 심의대상 정의 및 심의기준 강화(제3조)

— 사업 신규 수주 시 심의기구 등 의사결정기구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성적 요인을 포함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신탁사업 등 수주 적정성 검토 강화(제4조, 제5조)

— 사업 수주 시 수주 경위와 이력 등을 파악하여 수주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수주 편중 의심 시 거래상대방과 직원의 유착 가능성 점검

— 수주 검토 시 사업부서 외 부서에서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며 준법 여부, 리스크 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수주 관련 임직원 청렴도 제고(제6조, 제7조)

— 신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직원의 심의 관련 의사결정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척 · 회피 관련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사업 수주에 직접 관련된 임직원에게 청렴이행서 및 이해상충 점검표를 징구

#### 나)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

□ 용역업체 선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 및 점검 의무 부여(제8조~제10조)

— 용역업체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용역업체 선정 시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을 채택하도록 함

— 회사가 선정한 용엽업체의 내부기준 만족 여부, 주주 현황 등과 특정 업체 집중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자금집행 절차 강화 및 현금성 판매촉진비 제한(제11조, 제12조)

— 신탁사업의 자금집행 시 집행원인행위 확인 및 증빙자료 적정성 검토 의무를 부여하고 검토 절차를 강화하도록 함

— 현금성 판매촉진비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조사비 등 회사가 정하는 예외에 한정하여 허용

**다)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제고**

□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제13조~제20조)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 관계 법령, 내규 등에 따라 임직원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직무 겸직 금지 의무 부여

— 임직원과 직무관련자 간 일체의 사적 거래를 금지하고 업무상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 유용 금지 의무 부여

— 부동산신탁사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 부당행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는 채널 운영 및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임직원 청렴도 설문 조사 근거 마련

— 임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관계법령 및 직무윤리 교육 실시

— 감사 및 준법감시부서에 사업부서 대비 적정한 인원 배치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